

2026학년도 2학기 산업체위탁생 재직사항 변동 신고 안내

1. 대상자 : 2026학년도 2학기 재직확인 서류 제출 이후 이직 또는 퇴직자(신입생 포함)

2. 제출서류 등록방법 :

가. 등록기한 : **이직자는 이직 후 10일 이내 , 퇴직자는 퇴직 후 7일 이내**

나. 입력경로 : UC포털 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학적 → 위탁생재직업체등록(N) **※입력 전 반드시 교무팀 문의(☎230-0534)**

다. 입력방법

- ① **신규** 버튼 → ② 해당 근무부분 선택 후 관련 사항 입력 → ③ 임시저장 → ④ 파일추가 → ⑤ 승인신청

위탁생재직업체등록(N)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학적

위탁생재직업체등록(N)

학번: 20202, 학기: 2학기, 학년: 2학년, 학부/과: 컴퓨터공학, 학부/과: 컴퓨터공학, 학부/과: 컴퓨터공학

학번/성명: 20202132, 김정민, (한)을업가농자 재외

직업군부업종

현재 근무업체: 근무부서: 전화번호: 타지역 근무자 실거라 입력 (해당 캠퍼스→산업체)

※1차산업종사자여: 근무 "농업경영" 또는 "어업경영"으로 선택할 입력

근무자주소: 자우기

현재 근무 산업체 건강보험자적 취득일

② 신규고향 근무부분을 선택하세요.

- 직전 신고 산업체 계속 근무 중
- 직전 신고 산업체에서 이직(타지역 전보발령 포함)
- 직전신고산업체 비자발적 퇴직(계약만료, 구조조정 등)
- 직전신고산업체 자발적퇴직

선택

③ 임시저장 ⑤ 승인신청

④ 파일추가

첨부파일 등록

파일번호: 파일명: 파일경로:

라. 파일 추가시 주의사항 : **제출서류 전체를 1개의 PDF파일로 제출**

※파일명 : 학번성명.pdf(예: 2601000홍길동.pdf)

마. 승인 신청이후에도 재직사항 변동 시 반드시 추가 신청바랍니다.

3. 재직사항 변동사유별 제출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제출 서류명	비고														
비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수급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샘플 7> -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2.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샘플 8> 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샘플 9> 3.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해당자) <샘플 10> (비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 미신청자만 제출 : 산업 체에서 발급)	※ 교육부 시행계획에 의거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비자발 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취업 일 경우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개최 후 제적처리 됩니다. (퇴직일과 이직일은 공적증명서상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 ⇒ 이직 후 관련 서류 제출 및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심의 후 학업유지 가능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미수급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샘플 7> -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비자발적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이직한 경우	1. 재직증명서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샘플 1> - 4대 사회보험 중 1개라도 미가입시 인정 불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샘플 7> -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4.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샘플 8> 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샘플 9> 5.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해당자) <샘플 10> (비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 미신청자만 제출:산업체 에서 발급) 6.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양식첨부> - 대표자 직인만 인정	<4대 사회보험 가입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추가 제출> <table><tr><td>산재보험 미가입자 (택1)</td><td>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샘플 2> : 자진신고사업장일 경우 산업체에서 발급 2.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샘플 3> 3. 건설업 종사자 :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 <샘플 4></td></tr><tr><td>고용보험 미가입자 (택1)</td><td>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샘플 2> : 자진신고사업장일 경우 산업체에서 발급 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샘플 5> 3. 건설업 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샘플 6></td></tr></table>	산재보험 미가입자 (택1)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샘플 2> : 자진신고사업장일 경우 산업체에서 발급 2.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샘플 3> 3. 건설업 종사자 :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 <샘플 4>	고용보험 미가입자 (택1)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샘플 2> : 자진신고사업장일 경우 산업체에서 발급 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샘플 5> 3. 건설업 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샘플 6>										
산재보험 미가입자 (택1)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샘플 2> : 자진신고사업장일 경우 산업체에서 발급 2.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샘플 3> 3. 건설업 종사자 :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 <샘플 4>															
고용보험 미가입자 (택1)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샘플 2> : 자진신고사업장일 경우 산업체에서 발급 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샘플 5> 3. 건설업 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샘플 6>															
자발적 퇴직자가 이직한 경우	1. 재직증명서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샘플 1> - 4대 사회보험 중 1개라도 미가입시 인정 불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샘플 7> -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4.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양식첨부> - 대표자 직인만 인정	<이직업체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추가 제출> <table><tr><td colspan="2">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td><td colspan="2">1.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서류 2번은 미제출</td></tr><tr><td rowspan="2">1차 산업 종사자</td><td>농업인</td><td>1. 농지원부</td><td rowspan="2">※제출서류 1~2번 은 미제출</td></tr><tr><td>어업인</td><td>1. 어업인허가증명서</td></tr><tr><td colspan="2">가족운영회사 재직자</td><td colspan="2">1.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가족이 운영 하는 회사 재직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불가하여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청함</td></tr></table>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서류 2번은 미제출		1차 산업 종사자	농업인	1. 농지원부	※제출서류 1~2번 은 미제출	어업인	1. 어업인허가증명서	가족운영회사 재직자		1.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가족이 운영 하는 회사 재직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불가하여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청함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서류 2번은 미제출														
1차 산업 종사자	농업인	1. 농지원부	※제출서류 1~2번 은 미제출													
	어업인	1. 어업인허가증명서														
가족운영회사 재직자		1.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가족이 운영 하는 회사 재직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불가하여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청함														

4. 이직자 참고 사항 (교육부 2026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발췌)

□ 산업체 인정기준

- 대학의 장은 사전(학년도 개시 전까지)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 체결
 -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산업단지 및 단체(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지 및 단체(조합)의 장과 계약 체결 가능
- 인정 산업체 종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유의사항

-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 증명서로만 하여야 함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빙 서류**)
- ☞ 대학은 재직자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4종의 가입증명서(또는 가입내역확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자는 대체 서류 제출로 증명 가능
 - 예) (국민연금)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60세 이상자 등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등 (고용보험)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
 - * 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 ☞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전문대학간 협약에 의해 위탁교육 가능**
-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 ☞ 장학 지원을 확대하되, 특히 위탁 산업체로부터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5. 공적증명서 발급

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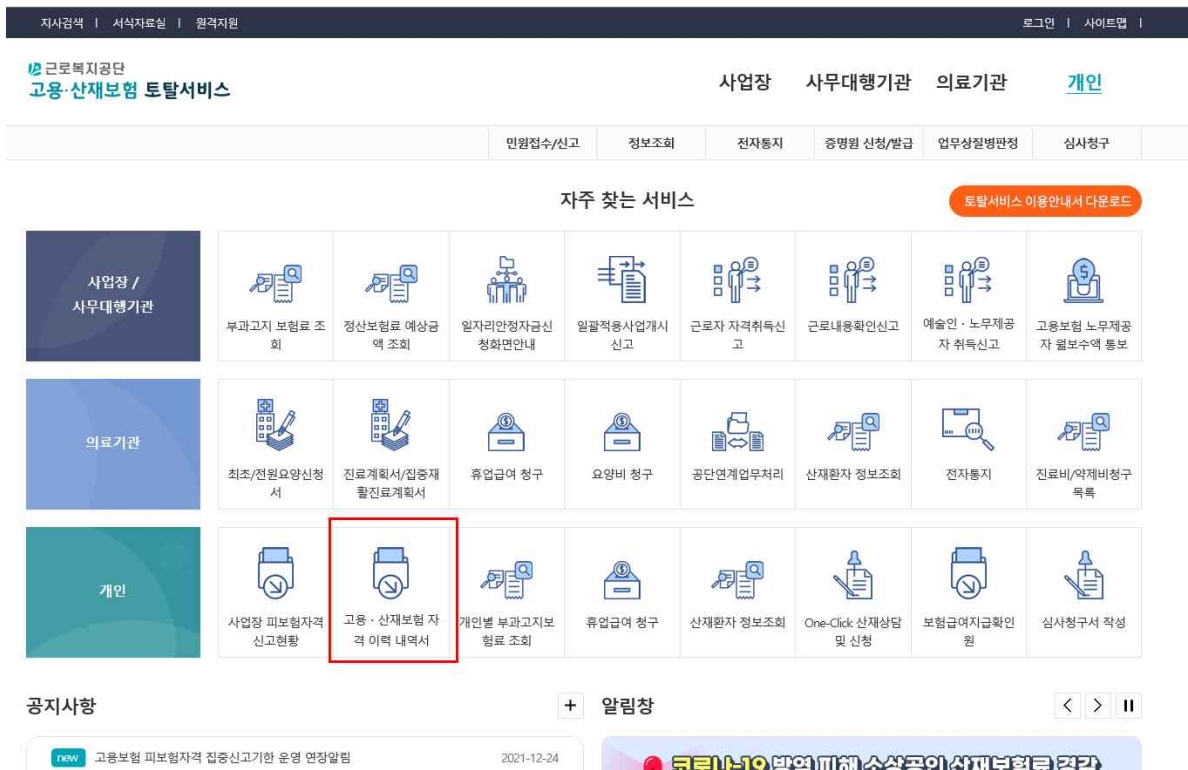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공동인증서 필요>



나.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http://total.kcomwel.or.kr/main.do>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공동인증서 필요>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



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공동인증서 필요>

화면 + - 소리 + -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서안내 전체메뉴 Language 분야별업무사이트

h-well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건강iN 정책센터 국민과함께 공단요모조모

Q

≡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Q

4대 보험료 납부는 비대면으로!
2022.1.1.부터 공단 민원실에서
보험료를 직접 수납하지 않습니다



4 / 16 < || >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

사업장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환급금
조회/신청


보험료
조회/납부


본인부담
상한액조회


보험료
계산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건강검진
대상조회


가족
건강관리


민원
서식자료실

1 / 1 ||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6. 관련문의 : 교무팀 052-230-0534